

Ia1.29.3

여성자영업자조약
3차 전부보너

1890 보수 6월 10일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

서 문

1. 대한민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동협약 제18조에 따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3차 보고서를 제출한다.
2. 1989년 제2차 보고서 제출 이후 한국정부는 여성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실현하였다.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사회 제분야에 여성의 동등하게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 주요한 정책내용으로는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강화,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일반의 성차별적 고정관념 타파 등이 있다.
3. 정부는 1988년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제2)실을 신설, 정부내 여성업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였으며 각 부처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정무장관(제2)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후속적으로 15개 시·도 및 전국 184개 시·군·구에 가정복지과를 설치하므로써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여성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3년 2월 출범한 새정부는 국무위원 중 3명을 여성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최초로 여성차관을 임명하는 등 정부의 최고정책결정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대폭 확대시켰다.
4. 여성문제의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의 성차별적인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고 모성보호 규정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1990년 남녀평등 정신이 강화되도록 가족법을 개정하고, 가족관계를 새로이 정립하

기 위하여 호적법, 세법을 개정하고 가사소송법을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1990년과 1994년 개정된 상속세법은 배우자와 관련된 증여·상속세의 경우 공제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므로써 종래 부당한 차별을 받았던 전업주부에게도 상당부분 재산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5. 1991년에는 종합적인 탁아대책으로서 탁아관련 특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정부의 지원하에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1989년과 1991년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여성채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였던 남녀구분 모집조항이 철폐됨으로써 공직부문에 여성참여가 크게 증대되었다. 1991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을 위하여 모집·채용상의 구체적인 남녀차별 개선지침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고용현장에서의 불평등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1992년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무장관(제2)실 등 정부내 관계부처에서 소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4년 1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6. 정부는 1990년부터 국·공립 연수기관에 여성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공무원들의 남녀차별 의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교과과정의 개정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교사의 남녀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평생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여학생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7. 정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정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 실행계획에 여성개발부문을 포함시켰다. 제6차(1987-1991)에 이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은 교육, 고용, 문화·사회활동, 복지 및 국제협력 분야별로 여성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출범한 새정부에서 수립한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에도 주요 경제시책의 하나로 여성개발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8. 200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여성의 평등, 개발, 평화를 추구하는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1994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 진출을 계기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제 1 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차별의 정의

9. 1989년 4월 1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의 2(정의)

- ①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③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자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헌법상 여성의 지위

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앞의 평등과 성차별 금지를 선언한 양성평등의 원칙조항이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원칙은 각 생활영역에 따른 개별적 평등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11. 경제적 생활영역에 대해서는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2. 가족생활 영역에 대하여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헌법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써 정치적, 공적 생활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14. 또한 헌법 제34조 제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써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조치

15. 1980년대 이후 여성문제의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성차별적인 조항이 대폭 개선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

16. 최저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고용에서의 남녀 균등 대우원칙(제5조)과 모성보호규정(제5장)을 두고 있다.

17. 종래에는 동 법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벌칙도 경미하였으나 1989년 3월 29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1) 적용범위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3) 생리휴가를 여성근로자의 청구 없이도 사용자가 주어야 하고 (4) 여성에게 아업이나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종전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만 있으면 가능하였던 것이 근로자 본인의 동의도 얻도록 하였다.

18. 특히 법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녀균등 대우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모성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이내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
다.

가족법 (민법중 친족·상속편) 개정

19. 1958년 제정된 민법중 가족관련법은 전통적 한국문화의 특성으로 인
하여 혼인, 이혼, 상속 등 여러 조항에서 양성평등에 반하는 규정이 많았
으나 1990년 개정시 이 부분이 대폭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가족법은
여성의 법적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 개정 가족법은 종래 대표적인 성차별적 요소중의 하나인 호주제도를
상속에서 승계로 대폭 개선하고 상속에서의 남녀차별적 요소를 없앴다.
또한 이혼할 때에는 남녀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만들어 여성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이혼한 여성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등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크게 신장시켰다.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21. 정부는 개정가족법의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 법과
관련된 호적법, 세법, 가사소송법 등의 법과 제도를 제·개정하였다. 19
90년과 1994년 개정된 상속세법은 증여,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배우자 즉 전업주부에게도
상당부분 재산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표 1)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 내용

구 분	구 가족법	신 가족법
(가족의 생활관계)		
1. 부부의 동거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남편의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
2. 입양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
3. 이혼시 재산 분할·청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주부 가사노동의 재산형성 기여도 인정
(친권)		
1. 친권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의견이 상이할 때父가 단독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공동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상이 할 때 가정법원이 결정
2. 서자의 친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서자의 父와 호적상의 母가 공동으로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모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친권자가 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결정
3. 이혼후 양육자 지정 및 자녀 면접교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시 자녀양육은 부모가 협정하되 협정이 안될 때는 父가 양육 ◦ 양육권이 없는 父 또는 母의 자녀면접교섭권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시 자녀양육은 부모가 협정하되 협정이 안될 때는 가정법원이 결정 ◦ 양육권이 없는 父 또는 母의 자녀면접교섭권 인정

구 분	구 가족법	신 가족법
4. 친족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촌 이내의 부계혈족 ◦ 4촌 이내의 모계혈족 ◦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 부인의 부모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촌 이내의 부계·모계혈족 ◦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부계·모계혈족
(호주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기 불가능 * 호주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거소장소 지정권, 가족의 입적동의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기 가능 ◦ 여성호주의 지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법에서는 집안에 남자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
(상속제도)	<p>1. 상속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언없이 호주가 사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남 1.5 - 차남이하의 아들과 미혼인 딸 1 - 결혼한 딸 0.25 - 배우자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언없이 호주가 사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1 - 배우자 1.5

구 분	구 가족법	신 가족법
2. 상속인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이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 단독 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이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과 부인의 부모가 공동상속
3. 기여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자료) : 정무장관(제2)실, 「가족법 어떻게 바뀌었나」, 1990

22. 부동산 구입시 구입자금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종래에는 인정하는 내용과 금액 한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내용이었으나 1991년 6월 개정되어 남녀차별을 완전 철폐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및 개정

23.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4. 이 법의 제정으로 근로에 있어서 남녀균등대우 원칙과 모성보호 원칙이 구체화되었고 모집과 채용단계에서의 성차별 행위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25. 그러나 법의 시행에 있어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규정의 미비, 법 집행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정부는 1989년 4월 이 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첫째,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등의 사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차별의 정의를 명문화하였고 둘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육아휴직 기간을 1년이내로 하여 그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넷째, 분쟁해결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였고 다섯째,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26. 특히 법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에서 성차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와 육아휴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모자복지법 제정

27. 정부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9년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모든 배우자와 사별, 이혼 또는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등을 포함한다.

28. 정부는 전체 모자가정 가운데 공적부조 대상인 저소득 모자세대의 경우 모자보호시설에 3~5년동안 수용보호하여 기본 생계보조와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 모자보호시설은 전국에 39개소가 있으며, 특히 모

자보호시설 퇴소후 자립기반이 미약한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모자자립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29. 기혼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아동양육의 책임이 남녀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게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 고조되면서 종전의 탁아관계 법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탁아대책을 마련하고자 탁아에 관한 특별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 14일 제정되었다.

30. 이 법은 특히 상시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1. 동 법의 제정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의 체계화와 보육시설의 확충이 실현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탁아책임이 강조되었고 탁아 문제가 아동복지만이 아니라 여성복지이며 사회복지의 중요 부문임이 분명해졌다.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32. 전자는 국가공무원에, 후자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법령으로 1989년 6월과 1991년 6월에 각각 개정되었다. 이 법령의 개정으로 남녀구분 모집에 의한 여성공무원 채용기회의 제한이 철폐되었다

②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비준

33. 한국은 1983년 5월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에 서명하였고 1984년 12월 27일 2개항(제9조 여성 및 자녀의 국적관련조항, 제16조 혼인과 가족관계 관련 일부조항)을 유보한 상태로 비준하였으며 이 협약은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하여 왔다. 상기 유보내용중 제16조 제1항 (다)(라)(바)호에 대한 유보는 1990년 가족법 개정에 의하여 1991년 3월 15일 철회되었으며, 협약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사)호중 가족 姓을 선택할 권리는 국내법과 상치되어 유보중이다.

34. 국제법상 한국을 구속하는 국제적 협약이나 제법규의 국내법에 대한 효력에 관해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비준한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있는 국내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35.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의 성차별 등)으로 인한 고충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이 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의 고충처리기관에서 처리하게 하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지원 또는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기관

36. 근로여성은 성차별에 따른 고충을 그 사업장 사업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사항을 사업장 내에 설치한 고충처리기관에 위임하여 1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지원

37.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고충처리기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의해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근로여성 또는 근로여성이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의 쌍방 또는 일방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관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지도·권고를 하거나 고용문제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한다.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38.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회부한 분쟁사건의 조정을 위해서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관할구역안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한다.

39. 위원회는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출석·자료제출·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

40.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상의 남녀균등 대우원칙과 모성보호 규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조치에 의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하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모든 교육기관에 여학생 입학제한 철폐

41. 제10조 (다)호 「교육내용의 남녀평등조치」에 언급되어 있다.

공공교육기관에서의 남녀차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42. 제5조 (가)호 「남녀평등의식교육 실시」에 언급되어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43. 제4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조치」에 언급되어 있다.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정

44. 1993년 12월 정부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채용, 보직,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므로써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기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남녀구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포상 등에 있어서도 실적과 공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45. 기업체내에서의 남녀평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11조 (나), (다)호에 언급되어 있다.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기구 설치

정무장관(제2)실

46. 1988년 2월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제2)을 여성으로 임명하여 여성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47. 정무장관(제2)실은 각계와의 대화, 의견수집 등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건의하고 주요정책을 연구·개발하며 소관부처간에 상충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 각 원, 부, 처, 청이 여성의 권리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는 미리 정무장관(제2)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정무장관(제2)실의 조직은 장관, 보좌관(차관급), 실장(1급 상당) 밑에 4개의 조정관실을 두고 있으며 총 인원은 39명이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48. 정부는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983년 12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정책자문기관인 동시에 여성정책의 최고심의조정기구로서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기관간의 여성지위향상에 관한 업무를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49.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장관, 통일원장관, 정무장관(제2)이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외무, 내무, 법무, 교육, 문화체육, 농수산, 보사, 노동부장관 등의 당연직위원과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 모두 3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도록 되어 있다.

50. 1993년 12월 동 위원회의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였는 바, 그 내용은 위원수를 25인에서 35인으로 확대하고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정부 각 부처에 대하여 여성관련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 각부처의 여성관련 행정기관

51.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정무장관(제2)실 이외에 일반부처의 기능에 따라 전 부처에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52. 보건사회부에는 사회복지정책실내에 부녀복지과가 설치되어 있고 복지분야에 있어 여성문제를 총괄하는 가정복지심의관이 있다. 가정복지심의관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아동복지과 및 노인복지과를 관장하고 있다. 부녀복지과의 주요업무는 여성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계획 수립,

여성발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불우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관장 등이며 아동복지과는 영유아보육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53. 노동부에는 근로기준국에 부녀소년과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로 부녀지도관이 있어 노동분야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부녀소년과는 여성과 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보호 및 지도,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여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근로여성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위원은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및 노사단체 대표, 여성계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4. 그외에 경제기획원, 통일원, 총무처, 환경처,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등이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지방단위에서는 15개 시·도의 가정복지국과 184개 시·군·구의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의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출연 여성연구기관

55. 여성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이 1983년 설립되어 여성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그리고 여성활동에 필요한 지적·기술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직은 이사회, 원장, 부원장 밑에 4실 1국을 두고 있으며 총 인원은 164명이다.

56. 1991년 4월 정부는 여성정책 추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보건사회부에서 정무장관(제2)실로 이관하였다.

②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57.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에 여성개발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여성문제를 본격적으로 국가발전 계획에 통합하기 시작하였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은 여성의 사회참여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성개발부문을 교육, 고용, 문화·사회활동, 복지 및 국제협력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표 2). 또한 1993년 정부에서 수립한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은 주요 경제시책의 하나로 여성개발부문을 포함하였으며 이의 후속조치로서 근로 여성복지기본계획(1994-1997)을 수립하여 고용평등, 모성보호, 취업확대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58.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1986) 여성부문은 「남녀 공동 참여 공동책임사회의 실현」을 기본목표로 하고 여성의 정치활동 증진을 위한 정치의식 확립, 시민적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자원활동의 증진, 소비자활동 및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2) 제7차 5개년 여성개발부문계획 (1992 - 1996)

분야별	주요정책과제
1.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의 평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 진로교육의 강화, 교육정책 결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등 6개 과제 ○ 사회교육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사회교육 기회의 확대 및 내용의 평등화등 4개 과제

분야별	주요정책과제
2.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용 촉진 및 취업안정 기반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력의 고용안정, 자녀양육 지원체제 강화등 5개 과제 ○ 여성직업훈련 기능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훈련 공과의 개설, 향상·전직훈련 과정의 강화등 6개 과제 ○ 남녀평등한 고용관행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등 3개 과제 ○ 저혜택 취업여성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업체 취업여성의 지원, 가내근로자 보호등 6개 과제
3. 문화·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개선등 3개 과제 ○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등 4개 과제
4.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로부터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 강화등 2개 과제 ○ 보육서비스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육 확대등 4개 과제 ○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정에 대한 서비스 확대등 3개 과제

분야별	주요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복지 전문인력의 강화등 4개
5.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 및 인류평화를 위한 국제공동사업 참여 ◦ 국제협력활동 증진을 위한 관련자료 개발 ◦ 국제기구에 한국여성 진출 확대

(자료) : 정무장관(제2)실,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여성개발부문계획」, 1992

③ 정부의 여성개발예산

59. 정부의 예산제도와 체제가 성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개발부문 예산액을 별도로 분리, 집계하기는 어렵다.

제 4 조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①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

60. 정부는 사회진출이 낮았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공직 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 남녀구분 모집제를 적용, 모집인원의 일부를 여성으로 충원토록 하는 특혜를 주었다. 그러나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진출 욕구가 증가하면서 남녀구분 모집이 오히려 여성의 공직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케 되었다.

61. 이에 따라 정부는 1989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1991년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직무특성상 남녀 구분모집이 불가피한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성별 구분모집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종전에는 합격자중 여성비율이 10%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도에는 30.2%, 1991년 43.3%, 1992년 40.7%의

비율로 여성합격자가 늘어났으며 동 조치이후 1989년과 1992년 사이에 여성공무원 수가 41,894명 증가하였다.

62. 정부는 1988년 15개 시·도에 가정복지국을 설치하고 여성,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한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복지국장을 여성으로 임명하여 여성복지를 위한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92년에는 전국 184개의 전 시·군·구에 가정복지과를 설치하여 그 장을 여성으로 임명했다.

63. 1992년까지는 국무위원 23명중 여성이 1명으로 4.3%였으나 1993년 현재 국무위원중 정무장관(제2), 보사부장관, 환경처장관 등 3명이 여성으로 임명되었고(13%), 특히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정무장관(제2)실은 장관과 더불어 차관도 여성으로 임명하므로써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대폭 확대시켰다.

② 여성특별 보호규정

64. 현행 근로기준법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의 여성사용금지(제51조), 여성의 간내근로 금지(제58조), 야업(하오 10시부터 상오6시까지) 및 휴일근로의 원칙적 금지(제56조),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의 금지(제57조),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제59조), 60일의 유급 출산휴가(제60조 제1항), 임산부의 경이작업에로의 전환배치 및 시간외 근로금지(제60조 제2항), 생후 만 1년의 유아를 가진 근로여성에 대하여 1일 2회, 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제공(제61조),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귀향하는 경우 귀향여비 제공(제62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7조 제2항은 산전, 산후의 여자를 법에 의한 휴업기간과 그 후의 30일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써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제 5 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65. 정부는 남녀간의 차별이나 성역할 고정화를 유발시키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철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남녀평등 의식교육 실시

66. 정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합리한 통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급 국·공립 연수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27개 교육과정에서 총 4,905명, 1992년에는 31개 교육과정에서 총 3,529명이 남녀 차별의식 개선교육을 받았다.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7개 연수기관에 여성관련 교과목이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기타 교육기관에서는 특강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67. 또한 정부는 1992년 여성의 능력개발 및 남녀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44개 사회교육기관에 보급하므로써, 여성사회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68. 그밖에 서울, 대구, 전남, 충북지역 등 4개 지역에서는 일반인들이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개발원이 주관하는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은행의 주요 업무는 강사정보 제공과 출강교육, 교육프로그램 자문과 교육자료 제공이다. 강사진은 분야별 전문지식을 겸비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사은행 1개소에 약 60~70명 정도의 강사진이 활동하고 있다. 1992년 현재 연인원 45만 5,517명을 대상으로 총 2,505회 출강교육을 실시하였다.

69.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 교육을 목적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은 영화, 비디오, 슬라이드 등의 시청각 교재를 제작하여 전국 15개 시·도청 부녀복지과와 여성회관 등을 통해 일반 민간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1984년부터 여성 문제를 다룬 영화 8편, 비디오작품 12편, 슬라이드 5편을 제작·보급하였으며 1992년말 현재 제작된 시청각 교재의 대여실적은 총 10,800회로 180여만명이 관람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70.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인 방송위원회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등 위원회는 1988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992년에는 이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심의규정은 방송의 공정성, 심의절차, 직업·학력등 모든 면에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1985년 2월 15일 「여성에 대한 편향적 묘사억제 권고결정문」을 각 방송사에 송부하였고, 1990년 「시청자 불만 위원회」를 발족, 여성문제와 함께 방송매체에 대한 일반적인 모니터링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또한 정무장관(제2)실의 제안에 따라 1990년 한국

방송공사는 여성에 관한 공공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TV 공익광고를 제작, 전국의 TV네트워크를 통하여 방영하였으며, 1991년 국립영화제작소는 「여성지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제목의 7분길이 홍보영화를 제작, 전국 영화관을 통하여 상영한 바 있다.

(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71. 정부는 남성이나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녀를 대상으로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5조 (가)호 「남녀평등 의식교육 실시」에 언급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2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44개 사회교육기관에 보급하였으며 이 내용중에는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녀교육에 있어서 남녀공동책임감을 일깨우는 가정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72.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의 공동책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정착화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윤락을 금지하는 법률

73. 우리나라 매춘이나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과 현행 형법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1962년에는 유엔의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매춘행위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에 가입하였다. 정부시책으로는 1969년 보건사회부내에 중앙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윤락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

74.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매매춘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 및 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 또는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신상상담, 지도·조사, 수용보호, 직업알선 등을 할 수 있는 보호지도소,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설치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윤락행위자 및 상대자, 유인 또는 권유행위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보수목적이나 영업목적으로 매개행위를 하거나 처소를 제공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폭력·위협·허위방법이나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한 매개행위자는 5년이

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중앙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매년 1회 이상씩 윤락여성에 관한 제반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75.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에서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추행, 간음,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醜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녀를 매매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락여성 보호대책

76. 정부는 또한 윤락여성 등 요보호여성에 대한 발생예방 및 선도보호를 위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부녀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77. 부녀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선도가 필요한 요보호여성은 부녀직업보도소에서 6개월내지 1년간 수용, 보호되어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받은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 1991년도에는 22개소의 부녀직업보도소를 운영하여 3,059명을 교육시켰다.

78. 윤락여성만을 별도로 보호하는 직업보도시설은 1992년 현재 3개소 (1개소는 중간기술훈련장)가 있으며 부녀상담원의 상담을 통하여 보호, 선도가 필요한 여성을 6개월에서 1년간 수용, 보호하여 기술교육을 시킨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윤락여성 보호시설 운영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윤락여성 직업보도 시설

(단위 : 명)

연도	시설수	시설 퇴소 인원				현원
		총 계	취업	귀 가	기 타	
1990	5	1,279	117	1,088	74	472
1991	5	1,357	155	1,121	81	428
1992	4	1,124	113	958	53	249
1993. 6	3	482	60	363	59	380

(자료) : 보사부, 미발간자료, 1993

성폭력근절을 위한 정책

79. 정부는 1992년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무장관(제2)실, 법무부 등 9개 부처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중 성교육 강화 (교육부)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설치·운용 (보사부)
- 여성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에 성폭력상담소 설치 유도 (노동부)
- 비디오, 영화, 출판물에서의 성폭력 유발요인에 대한 규제강화 (문화체육부)
- 피해여성의 법률구조를 위한 경찰서내 여성상담실 확대 운영 (경찰청)
- 성폭력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지원 (정무장관(제2)실)

80. 정부는 1992년 4월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착수하였으며 1994년 1월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가의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수사와 재판절차

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 제정과정에서 여성계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다.

제 7 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가)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

여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81.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써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서 여성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법률에서도 여성은 이유로 하여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대통령의 경우는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의 경우는 만 25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여성유권자

82. 1992년 12월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유권자 수는 총 29,422,658명이었으며 이중 여성은 14,923,300명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나)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입법부

83. 1985년부터 1992년 사이 여성의 국회진출은 12대(1985~1988)의 경우 국회의원 총 276명중 여성이 8명(2.9%), 13대(1988~1992)의 경우 299명중 6명(2.0%)이었으며 14대(1992~1996)에서는 296명중 4명(1.4%)이다.

(표 4) 국회의원 수

(단위 : 명, %)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수	여성의원		여성 직선의원	
		수	비율	수	비율
12대 (1985-1988)	276	8	2.9	2	0.7
13대 (1988-1992)	299	6	2.0	0	0
14대 (1992-1996)	296	4	1.4	0	0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19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발간자료, 1993

84. 1991년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은 40명으로 전체 4,304명중 0.9%를 차지하였으며, 광역의회에는 8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전체 866명중 0.9%이다(표 5). 그러나 기초의회의원 여성후보자 대비 당선자의 비율은 약 28.4%에 이르고 있어 향후 여성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지방의회 의원 수

(단위 : 명, %)

구 분	총의원수	여성의원수	여성의원 비율
기초의회	4,304	40	0.9
광역의회	866	8	0.9
계	5,191	48	0.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발간 자료, 1993.

행정부

85.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새정부는 정부최고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켰다. 1992년까지는 국무위원 23명중 여성이 1명으로 4.3%였으나 새 정부의 국무위원은 3명이 여성으로 13%에 달하며, 특히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정무장관(제2)실은 장관과 더불어 차관도 여성으로 임명되었다.

86. 1992년 12월 31일 현재 행정부 소속 공무원 총수는 총 871,527명이며, 그중 여성공무원은 219,845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5급(Assistant Director급)이상 행정부소속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총 492명으로 전체의 1.9%이다(표 6).

사법부

87. 1992년말 현재 총 사법공무원 9,089명중 여성은 1,955명으로 21.5%를 차지한다. 여성법률가의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1992년 12월 현재 1,133명의 법관중 42명이 여성으로 3.7%를 차지한다(표 7).

(표 6) 직급별 행정부 여성공무원 수 및 구성비(1992)

(단위 : 명, %)

구 분	여성공무원		국가여성공무원		지방여성공무원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일반직 (1-5급)	42,580 (492)	15.9 (1.9)	11,376 (212)	11.4 (1.7)	31,204 (280)	18.5 (2.2)
(6-9급)	(41,181)	(17.8)	(10,518)	(13.8)	(30,663)	(19.8)
(연구· 지도직)	(907)	(7.5)	(646)	(5.9)	(261)	(21.0)
기능직	40,649	22.3	20,933	25.7	19,716	19.6
별정직	5,396	33.0	652	15.7	4,744	38.9
고용직	4,210	38.4	3,158	86.8	1,052	13.3
특정직	127,009	33.5	126,895	34.7	114	0.8
정무직	1	0.9	1	0.9	-	-
계	219,845	25.6	163,015	29.4	56,830	18.8

(자료) : 총무처, 「총무처연보」, 1993

(표 7) 여성 사법공무원 수

(단위 : 명)

연도	총 사법 공무원수	여성수	여성비율
1987	7,886	1,568	19.9
1992	9,089	1,955	21.5

(자료) : 총무처, 「총무처연보」, 해당년도

88. 변호사의 경우는 총 2,600여명중 29명이 여성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2-3년간 법관 신규채용을 위한 국가고시(사법시험)에 합격한 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그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각부처 위원회

89. 정부는 각종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부방침(국무총리 지시)으로 각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증대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정무장관(제2)실에서는 이의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1993년에는 여성위원의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 4,600여명을 수록한 여성인명록을 작성, 각 부처에 제공하였다.

90.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은 1988년에는 5.5%였으나 1990년에는 9.0%로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2000년까지 15% 정도까지 확대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표 8).

(표 8) 정부 각부처 위원회 위원 구성

(단위 : 명, %)

연도	총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비율
1984	7,071	156	2.2
1988	10,645	585	5.5
1990	11,374	1,019	9.0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1986
정무장관(제2)실,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1988, 1991.

정당

91. 정당의 경우 여성당원의 비율에 있어서는 집권당인 민자당은 1992년 현재 전체 360만 당원중 56.3%가, 민주당은 120만명중 54%가 여성이다. 1993년 1월 현재 민자당은 대의원 6,800명중 540명(7.95%), 민주당은 5,900명중 800명(13.6%)이 여성이며, 당무위원에 있어서는 민자당이 52명

중 4명(7.7%), 민주당이 60명중 3명(5.0%)이다. 각 정당에서는 현재 모든 당직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헌을 마련중에 있다.

(다)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여성단체

92.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권리는 남녀 모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여성단체활동의 주요 목적은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으며, 각 단체별 특성에 따라 여성의 자질개발과 지위향상, 건전가정육성·소비절약을 위한 계몽사업,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국제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3년 현재 활동중에 있는 여성단체 수는 전국적으로 대략 2,200여개에 달한다.

93. 최근 여성단체는 회원간 기술협력증진, 국제여성단체와의 교류 등 작 능단체로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점차 그 활동영역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문제, 여성문제 등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4. 정부는 유엔 총회, 경제사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관련 회의 및 기타 국제기구 주최 각종 회의의 대표단에 여성을 참여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 참여비중을 가급적 높여 국제기구에 한국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1993년도 대표단에 여성의 포함된 주요 국제회의는 제48차 유엔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UNICEF 집행이사회, APEC 정상회담, 마약위원회 등 다수이다. 정부는 유엔 사무국 여성직원의 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제47차 유엔 총회(1992)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국제 업무 전문인력을 발굴, 양성하기 위한 국제협력 전문요원 양성·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95. 외무부에는 1992년 12월 현재 32명의 여성 있다. 이는 총 직원의 2.7%를 차지한다(표 9).

(표 9) 여성 외무공무원

(단위 : 명, %)

연도	총 외무공무원수	여성 외무공무원수	여성외무공무원 비율
1986	1,005	15	1.5
1992	1,193	32	2.7

(자료) : 총무처, 「총무처연보」, 해당년도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증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96. 이 조항은 국내법(국적법)에 저촉이 되어 비준이 유보되어 있으나 여성에게 국적선택권이 부여되는 방향으로의 국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당사국은 교육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97. 헌법 제31조는 남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명시하므로써 평등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법 제8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정부는 1968년이후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1984년이후에는 단계별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8. 국민의 평균교육연수는 1990년 현재 남자가 10.06년, 여자가 8.6년으로 1985년 (남 9.7년, 여 7.6년)과 비교했을 때 남자가 0.36년, 여자가 1.0년씩 증가하였다.

취학율

99. 취학율의 경우 국민학교 교육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 아동은 모두 취학하도록 되어 있어 취학율은 100.0%에 달하고 있다. 1992년

말 현재 중학교 취학율도 남녀 공히 90%를 넘고 있다. 고등학교의 여자 취학율은 1985년에는 84.8%였으나 1992년에는 87.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여자 취학율도 1985년 14.8%에서 1992년에 19.4%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10).

(표 10) 학교별, 연도별, 성별 취학률

(단위 : %)

구 分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총수	1980	102.9	95.1	63.5	11.8
	1985	100.0	100.1	79.5	25.0
	1992	101.5	97.0	89.2	29.6
여	1980	103.7	92.5	56.2	5.8
	1985	100.1	99.6	75.5	14.8
	1992	102.1	97.4	87.9	19.4

(주) : 취학률 = 취학자 수 / 취학연령인구
고등교육기관 : 전문대학 이상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2

재학생 비율

100. 학교교육 단계별 남녀학생 구성비를 보면, 의무교육 성격의 중학교 까지는 구성비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고학력 범위에 속하는 고등학교 이후의 성별 구성비 면에서는 여학생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11). 이는 경제발달과 더불어 여성들의 고등교육기회에의 접근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11) 학교 단계별 재학생 비율

(단위 : 천명, %)

연도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1980	66	30	45.2	5,658	2,745	48.5	2,472	1,161	47.0
1985	315	148	47.1	4,857	2,357	48.5	2,782	1,342	48.2
1992	450	214	47.5	4,560	2,205	48.3	2,336	1,136	48.6

연도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1980	1,697	722	42.6	616	148	24.0
1985	2,153	992	46.1	1,278	367	28.7
1992	2,126	1,012	47.6	1,608	509	31.7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2

각급 학교별 졸업율

101. 각급 학교 졸업율은 1985년과 1992년 사이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1992년의 경우 남녀전체 학생의 국민학교 졸업율은 98.9%이고 중학교 졸업율은 전체 98.9%, 여자 97.9%이며, 고등학교 졸업율은 전체 94.5%, 여자 96.7%이다(표 12). 이는 1985년 이후 학생들의 거의 대다수가 일단 입학한 각급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있음을 말하며 표에 나타나 있듯이 남녀간의 차이를 지적하기는 어렵다.

(표 12) 각급 학교 졸업율

(단위 : %)

연도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계	여	계	여	계	여
1980	94.1	98.4	94.4	98.4	94.4	98.4
1985	96.8	100.0	92.0	94.7	92.0	94.7
1992	98.9	97.9	94.5	96.7	89.4	94.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2

고등교육기관의 여성참여

102. 1985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총 학생수 1,277,825명중 여학생은 367,216명으로 28.7%였으나 1992년 현재에는 총 학생수 1,608,005명중 509,960명이 여성으로 31.7%를 차지하고 있다.

103. 여대생을 전공별로 살펴보면 1985년에는 사범계열 23.5%, 자연계열 19.9%, 인문계열 19.0%, 사회계열 14.6%였으나 1992년도에는 자연계열 26.4%, 사회계열 19.3%, 인문계열 17.5%, 사범계열 14.4%의 순으로 자연계열과 사회계열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13).

(표 13) 고등교육기관 전공별 남녀학생수

(단위 : 명, %)

구분	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의학계	사범계	기타
총	80 601,902 85 1,277,825 92 1,608,005	49,603 170,332 187,730	111,338 325,894 395,596	292,716 482,792 696,624	31,561 80,063 119,682	38,272 77,657 95,943	68,369 141,087 112,430	10,043
남	80 456,689 (100.0) 85 910,609 (100.0) 92 1,098,045 (100.0)	34,135 (7.5) 100,711 (11.1) 98,469 (9.0)	98,863 (21.6) 272,101 (29.9) 297,424 (27.1)	250,232 (54.8) 409,701 (45.0) 562,063 (51.2)	10,793 (2.4) 32,561 (3.6) 51,407 (4.7)	22,039 (4.8) 40,732 (4.5) 49,878 (4.5)	33,720 (7.4) 54,803 (6.0) 38,804 (3.5)	6,907 (1.5)
여	80 145,213 (100.0) 85 367,216 (100.0) 92 509,960 (100.0)	15,468 (10.7) 69,621 (19.0) 89,261 (17.5)	12,475 (8.6) 53,793 (14.6) 98,172 (19.3)	42,484 (29.3) 73,091 (19.9) 134,561 (26.4)	20,768 (14.3) 47,502 (12.9) 68,275 (13.4)	16,233 (11.1) 36,925 (10.1) 46,065 (9.0)	34,649 (23.9) 86,284 (23.5) 73,626 (14.4)	3,136 (2.2)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년도

(나)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각급 학교별 여교원

104. 각급 학교별 여교원의 수와 그 비율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5년의 국민학교 여교원 수는 54,500명(전체 교사수의 43.1%)이었으며 중학교의 경우 26,808명(38.5%), 인문계고등학교 7,853명(19.6%), 실업계 고등학교 6,328명(21.4%)이었다. 1992년의 국민학교 여교원 수는 73,195명(전체 교사수의 52.7%), 중학교 46,019명(48.3%), 인문계 고등학교 12,486명(21.8%), 실업계 고등학교 9,888명(25.4%), 고등교육기관 9,618명(20.5%) 등으로 나타났다(표 14). 1985~1992년 사이에 여교원 수 및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4) 각급학교 여교원 수 및 구성비

(단위 : 명, %)

연도	국민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고등교육기관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80	119,064	43,792 (36.8)	54,858	18,010 (32.8)	27,480	4,734 (17.2)	23,468	3,995 (17.0)	20,900	3,270 (15.6)
'85	126,785	54,500 (43.1)	69,553	26,808 (38.5)	40,040	7,853 (19.6)	29,506	6,328 (21.4)	33,895	5,967 (17.6)
'92	138,880	73,195 (52.7)	95,330	46,019 (48.3)	57,358	12,486 (21.8)	38,984	9,888 (25.4)	46,864	9,618 (20.5)

(주) : ()안은 구성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2

각급학교별 여교장, 총(학)장

105. 학교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여자교장 혹은 총(학)장의 수는 매우 적으나 그 수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1985년 현재 국민·중·고등학교의 교장 총수 10,022명중 여교장 수는 280명으로 2.8%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에는 10,030명 중 406명(4.1%)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총(학)장은 1992년 현재 총 267명중 여성은 22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표 15).

(표 15) 여교장, 총(학)장 수 및 구성비

(단위 : 명, %)

연도	국민학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고등교육기관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80	6,448	115	1.8	1,745	66	3.8	1,207	57	4.7	581	38	6.5
85	6,512	122	1.9	2,014	98	4.9	1,496	60	4.0	869	52	6.0
92	6,113	187	3.1	2,246	155	6.9	1,671	64	3.8	267	22	8.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2

(다)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남녀공학

106. 남녀공학은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1992년 현재 국민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이며 중학교의 55.1%, 고등학교의 40.5%가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최근 신설되는 모든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실시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성차별적인 교과과정 개정

107.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 기간중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교과목의 편제, 교과서의 내용, 여학생의 진로지도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과학·기술등 비전통 교육분야에서의 여성등록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과목 편제에 있어 남학생에게만 이수시키던 중학교의 기술과 여학생에게만 이수시키던 가정교과를 통합하여 남녀간 공통 이수토록 하였다.

- 둘째, 교과내용상의 남녀 역할에 대한 편견을 시정하기 위해 1987년부터 편찬하는 교과서 삽화의 남녀비율을 균형 배치하므로써 교과서 내용의 성역할 분담에 대한 편견을 제거토록 하였다.

교육내용의 남녀평등조치

108.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는 종래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던 일부 대학의 입학제한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109. 그 결과 기능대학(1987), 세무대학(1988), 경찰대학(1989), 철도전문대학(1990), 농협전문대학(1991)에 여학생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유일하게 입학이 제한된 군 사관학교에도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110. 성별로 고정화된 진학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여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진로상담 교사에게 보급하여 이용토록 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에게 성역할 의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장학금 및 학비감면자

111. 중·고등학교 학생중 장학금 급여자는 1985년 196,995명에서 1992년 371,458명으로 2.5배가 증가하였고 학비감면자는 1985년 749,913명에서 1992년 693,336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성별구분이 어려워 남·녀 학생수를 비교할 수는 없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여학생중 장학금 급여자의 비율은 1992년의 경우 5.4%로 남학생의 경우 (4.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비감면자수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아(1992년 여학생 36.4%, 남학생 27.8%) 장학금과 학비감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혜택 받는 율이 높게 나타난다.

(마)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문맹자

112. 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 제정이후 국민학교 교육을 의무교육화하여 국민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1970년 이후 국민학교 촐학율이 100.0%를 상회하고 있어 젊은 세대에는 사실상 문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도 15세이상 문맹자는 3.7%로 추정되며(UNESCO 추정치) 여자가 6.5%로 남자 0.9%보다 높게 추정되고 있다.

평생교육

113. 학업을 중간에 포기한 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는 사회교육제도가 있다. 여성의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요구에 부응하며 여성의 자기발전과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114. 종도에 학업을 포기한 여성들이 수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 독학사제도 (1990년도부터 실시), 근로여성교육이 있고 성인교육제도로서 평생교육기관 등이 있다. 평생교육은 대부분 여가, 교양, 기술관련 교육이며 기관유형별로는 정부주관 복지시설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등), 대학부설교육원, 학교단위 주부교실, 문화센터 등이 있다.

115. 정부주관 여성회관은 1993년 6월 현재 51개소가 설립되어 기술보도 사업과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1982년이래 구청 구민회관 등 14곳에서 3개월 과정의 상설교양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2년 현재 10여개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해에 2,000명 이상이 등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116. 학교단위 주부교실은 교육부 소관으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과 자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 자신들의 여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5년 교실개강 917회, 수강자 172,691명이었던 것이 1991년에는 1,041회 197,441명으로 증가하였다.

(바)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찌기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117. 1992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학생의 중퇴율(제적, 중퇴, 휴학자 등 포함)은 중학교에서 0.8%, 고등학교에서 2.3%로 남학생(중학교 : 1.0%, 고등학교 : 3.1%)의 경우보다 낮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제10조 (마)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가족계획

118.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사업은 국가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법정부차원에서 1960년대부터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결과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1960년 3.0%에서 1992년 0.96%로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90년 1.6%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선진국형의 저출산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가족 계획사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119. 정부는 1989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피임보급 물량의 축소와 더불어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요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자율피임 실천을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가족계획사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20. 가족계획 실적에 나타난 피임방법을 살펴 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피임률이 계속 증가한 반면 여성의 피임율이 줄어들고 있다(표 16).

(표 16)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

(단위 : %)

구 분	1982	1985	1988	1991
영 구 피 임	28.1 (19.1)	40.5 (57.5)	48.2 (62.5)	47.3 (59.6)
-여성(난관)	23.0 (40.2)	31.6 (44.9)	37.2 (48.2)	35.3 (44.5)
-남성(정관)	5.1 (8.9)	8.9 (12.6)	11.0 (14.3)	12.0 (15.1)
일 시 피 임	29.6 (50.9)	29.9 (42.5)	28.9 (37.5)	32.1 (40.4)
-여 성	22.4 (38.8)	22.7 (32.2)	18.7 (33.5)	21.9 (27.6)
-남 성	7.2 (8.6)	7.2 (10.3)	10.2 (13.2)	10.2 (12.0)
총 계	57.7 (100.0)	70.4 (100.0)	77.1 (100.0)	79.4 (100.0)
-여 성	45.4 (78.7)	64.3 (91.3)	55.9 (72.5)	57.2 (72.1)
-남 성	12.3 (21.3)	16.1 (8.7)	21.2 (27.5)	22.2 (27.9)

(자료) : 보건사회부, 가족보건사업 참고자료, 19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2

121. 1992년도 가족계획 사업실적중 남녀 불임시술의 비율이 55 : 45로서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한 후 처음으로 남성 불임시술이 여성 불임시술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불임시술의 부작용이 남성 불임시술의 그것 보다 많음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 하겠으며, 피임에 대한 국민 의식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122. 가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으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 모자보건사업, 아동보육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는 제13조 (가)호에서 언급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제12조 제2항에, 아동보육사업은 제11조 제2항 (다)호에 언급되어 있다.

-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123.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2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기본정신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및 기타 남녀고용평등관련 노동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24. 근로기준법은 총칙 제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라고 규정하므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1987년 제정되고 1989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모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2조 (나)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125.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유엔 산하 16개 전문기구중 유일하게 가입하지 못하였던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 되었다. 정부는 ILO가입을 계기로 대내적으로는 劳·使·政 3자로 구성되는 "국제노동협의회"

에서 선정하는 협약을 단계적으로 비준해 나가는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 더욱 매진하고, 대외적으로는 ILO 주관의 각종 회의·세미나 및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노동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여성경제활동인구

126. 1992년 현재 여성경제활동 인구는 7,770천명으로 1985년에 비해 1,795천명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1985년 41.9%에서 1992년 47.3%로 5.4% 포인트의 증가를 보였다(표 17). 1992년 연령별 여성경제 활동참가율은 연소연령층(15-19세)과 혼인 및 육아연령층(25-34세)에서 낮은 참가율을 보인 반면 35-39세(57.8%), 40-44세 연령층(60.5%)과 45-49세 연령층(61.0%)에서 높은 참가율을 보이는 M자형을 나타내고 있다(표 18).

(표 17)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 천명, %)

연도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남	여	남	여
1980	9,020	5,435	73.6	41.6
1985	9,617	5,975	72.3	41.9
1992	11,615	7,770	75.3	47.3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표 18) 연령별 여성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단위 : 천명, %)

구분	1985		1992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총 수	5,975	41.9	7,770	47.3
15 - 19세	399	21.1	346	17.4
20 - 24세	1,029	55.1	1,344	65.4
25 - 29세	721	35.9	822	44.3
30 - 34세	646	43.6	933	47.9
35 - 39세	685	52.9	942	57.8
40 - 44세	659	58.2	822	60.5
45 - 49세	648	59.2	690	61.0
50 - 54세	489	52.4	694	60.8
55 - 59세	353	47.2	527	54.1
60세 이상	347	19.2	651	27.7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여성취업자 현황

127. 취업자 전반의 수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인 가운데 1985-1992년 사이 여성 취업자 수 역시 1,781천명이 증가하였다. 총 취업자 가운데 여성 구성비도 1985년에 39.0%, 1992년에는 40.2%로 다소 증가하였다.

산업별 여성취업자

128. 1992년 현재 여성취업을 산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4,304천명(전체 여성 취업자의 56.6%), 광업 및 제조업에 1,921천명(25.2%), 그리고 농림·어업등 1차산업에 1,384천명(18.2%)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산업별 분포는 1985년에 비해 1차산업 취업자가 231천명 줄어든 반면, 2차산업 취업자는 563천명, 3차산업 취업자는 1,449천명이 늘어난 것이다(표 19).

(표 19)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산업	1980	1985	1992
1차산업	계 4,658 (34.0) 남 2,619 (31.0) 여 2,039 (38.9)	3,722 (24.9) 2,107 (23.1) 1,615 (27.7)	3,025 (16.0) 1,641 (14.5) 1,384 (18.2)
2차산업	계 3,095 (22.6) 남 1,918 (22.7) 여 1,178 (22.5)	3,654 (24.5) 2,296 (25.2) 1,358 (23.3)	4,828 (25.5) 2,907 (25.7) 1,921 (25.2)
3차산업	계 5,952 (43.4) 남 3,926 (46.4) 여 2,026 (38.6)	7,559 (50.6) 4,704 (51.7) 2,855 (47.8)	11,068 (58.5) 6,764 (59.8) 4,304 (56.6)
총 계	계 13,706 (100.0) 남 8,462 (100.0) 여 5,243 (100.0)	14,935 (100.0) 9,107 (100.0) 5,828 (100.0)	18,921(100.0) 11,312(100.0) 7,609(100.0)

(주) : ()안은 취업자 구성비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직업별 여성취업자

129. 1992년 현재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의 분포를 보면, 생산직 여성이 1,724천명(여성취업자의 22.7%)으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직 1,381천명(18.1%), 서비스직 1,345천명(17.7%), 판매직 1,330천명(17.5%), 사무직 1,099천명(14.4%),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731천명(9.6%)의 순이다 전문기술·행정관리직 및 사무직의 경우 1985년의 5.4%, 10.2%에 비해 각각 9.6%, 14.4%로 증가하였다(표 20).

(표 20) 직업별 여성취업자 수

(단위 : 천명, %)

직종	1980	1985	1992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185 (3.5)	317 (5.4)	731 (9.6)
사무관련직	415 (7.9)	596 (10.2)	1,099 (14.4)
판매직	867 (16.5)	1,068 (18.3)	1,330 (17.5)
서비스직	630 (12.0)	992 (17.0)	1,345 (17.7)
농림·어업	2,039 (38.9)	1,608 (27.6)	1,381 (18.1)
생산·운수·단순 노무직	1,106 (21.1)	1,248 (21.4)	1,724 (22.7)
계	5,243(100.0)	5,828(100.0)	7,609(100.0)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130. 우리나라 전체 여성근로자중 시간제 및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1992년 현재 16.2% (1,087천명)이다(표 21). 이들 시간제 여성 인력의 대부분은 서비스 관련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여성 시간제 직종으로는 파출부, 간병인, 요리사, 도배사, 판매원 등을 들 수 있다.

131. 정부는 1987년 이후 저소득층 근로여성이나 일용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단체를 통하여 가사서비스직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21) 여성근로자중 시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비율

(단위 : 천명, %)

연도	구 분	총 수	건설업	도 · 소 매 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운 수 창고업
1986	전 체 시간제 · 일용직 (비 율)	5,610 1,009	63 9	1,480 149	1,187 95	680 83	158 7	56 1
			18.0	14.3	10.1	8.0	12.2	4.4
								2.8
1992	전 체 시간제 · 일용직 (비 율)	6,702 1,087	124 15	1,266 164	1,340 143	940 175	250 22	74 4
			16.2	12.1	13.0	10.7	18.6	8.8
								5.4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특별조사결과보고」, 1987, 1993

(나)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 받을 권리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 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고용분야의 남녀평등조치

132.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문화하므로써 종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규제할 수 없었던 모집 ·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행위도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133.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4~5년에 걸쳐 노 · 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법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1990년 사립대, 병원, 호텔업종에서의 여성차별적인 취업규칙을 심사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1991년에는 고졸 행원 채용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는 은행 인사제도가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이의 폐지를 지시하였다. 1992년에는 선도부문으로 설정한 은행, 제2금융기관, 30대그룹 대표기업 등 169개 업체의 제규정을 일제 심사하여 1993년 상반기 중 이들 169개 업체 모두의 성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심사하여 1997년까지는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성차별 적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134.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훈련실시기관의 주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공공직업훈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실시하는 것이고 사업내 직업훈련은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체에서 반드시 직업훈련을 실시도록 하는 의무제도이며, 인정직업훈련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훈련이다.

135. 총 훈련기관중 여성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1985년은 272개 기관중 136개 기관(50.0%)이었으나, 1992년에는 411개 기관중 294개 기관(71.5%)으로 여성을 훈련시키고 있는 기관의 수와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훈련기관별 여성훈련자 수는 다음과 같다(표 22).

(표 22) 연도별, 성별, 훈련기관주체별 훈련생

(단위 : 명, %)

구 분		1980	1985	1992
계	계 여자	104,480(100.0) 25,594(24.5)	55,385(100.0) 9,057(16.3)	178,864(100.0) 29,791(16.7)
공 공	계 여자	31,131(100.0) 1,246(4.0)	22,583(100.0) 924(10.2)	26,131(100.0) 2,415(9.2)
사업내	계 여자	66,123(100.0) 21,258(32.1)	23,876(100.0) 4,388(48.4)	122,457(100.0) 19,827(16.2)
인 정	계 여자	7,136(100.0) 3,090(43.3)	8,926(100.0) 3,745(41.4)	30,276(100.0) 7,549(24.9)

(자료) : 노동부, 「여성과 취업」, 해당년도

136. 직업훈련 활동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1991년에 여성의 직업능력 배양과 직업훈련 기회확대를 위하여 건립된 여성전용 국립직업훈련원(안성여자직업훈련원)이다. 이곳에서는 정밀측정, 전자, 기계설비, 의상디자인, 귀금속공예, 사무자동화 등 6개 부문에서 총 450명의 여성이 훈련을 받고 있다.